북수원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www.북수원시티프라디움.com)과 견본주택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 열 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3.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분양계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2.11.11)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11.09,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수원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11.09, 광고일과 다름) 현재 수원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현재 수원시 거주자에게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이목지구 기반시설 공사 준공 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2022년 11월 25일(금) 16:00시 이후	2022년 11월 28일(월)~11월30일(수)(10:00~18: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북수원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 견본주택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1017-5)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오피스텔	○	○	○	○
잔여호실 / 취소후재공급	○	○	X	X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37733호(2022.11.09.)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수원시 2022-건축과-신축허가-70(2022.10.05.)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81-1번지 일원(이목지구 D1블록)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1,443.0000㎡
- 건축물 연면적 : 83,658.9929㎡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계획됨.
- 용도지역 지구 등 :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부동산이목지구), 상대보호구역(경기체육중학교), 도시개발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3층~지하1층(주차장, 기계/전기실), 지하1층(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지상 2층~28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26~28층 4개동 중 오피스텔 총 480호실
- 주차대수 : 569대(법정 482대)

■ 사업시행자 : ㈜시티주택건설
■ 시공사 : ㈜시티건설, ㈜시티종합건설, ㈜시티
■ 분양대금 관리자와의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본 사업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_반경200m이내)에 해당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 내진설계 등급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확보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 능력은 MMI 등급 Ⅶ- 0.204g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84A	426	84.6614	32.7921	117.4535	56.0907	173.5442	23.7468
84B	54	84.8927	33.5446	118.4373	56.2440	174.6813	23.8117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수원시 장안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2022.11.09,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기자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수원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 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호실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11.09, 광고일과 다름) 현재 수원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입	공급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 분양	일반공급	
84A	426	85	341	※ 주민등록등본 상 수원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84B	54	10	4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 입	층	공급 호실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10%)	잔금 (8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계약후 90일 이내	2023.06.10	입주시
84A	2	16	258,216,520	276,166,800	27,616,680	562,000,000	10,000,000	20,000,000	26,200,000	56,200,000	449,600,000
	3	16	261,892,200	280,098,000	28,009,800	570,000,000	10,000,000	20,000,000	27,000,000	57,000,000	456,000,000
	4	16	265,567,880	284,029,200	28,402,920	578,000,000	10,000,000	20,000,000	27,800,000	57,800,000	462,400,000
	5~9	80	269,243,560	287,960,400	28,796,040	586,000,000	10,000,000	20,000,000	28,600,000	58,600,000	468,800,000
	10~14	80	271,081,400	289,926,000	28,992,600	590,000,000	10,000,000	20,000,000	29,000,000	59,000,000	472,000,000
	15~19	80	272,919,240	291,891,600	29,189,160	594,000,000	10,000,000	20,000,000	29,400,000	59,400,000	475,200,000
	20~차상층	122	274,757,080	293,857,200	29,385,720	598,000,000	10,000,000	20,000,000	29,800,000	59,800,000	478,400,000
	최상층	16	295,892,240	316,461,600	31,646,160	644,000,000	10,000,000	20,000,000	34,400,000	64,400,000	515,200,000
84B	2	2	258,216,520	276,166,800	27,616,680	562,000,000	10,000,000	20,000,000	26,200,000	56,200,000	449,600,000
	3	2	261,892,200	280,098,000	28,009,800	570,000,000	10,000,000	20,000,000	27,000,000	57,000,000	456,000,000
	4	2	265,567,880	284,029,200	28,402,920	578,000,000	10,000,000	20,000,000	27,800,000	57,800,000	462,400,000
	5~9	10	269,243,560	287,960,400	28,796,040	586,000,000	10,000,000	20,000,000	28,600,000	58,600,000	468,800,000
	10~14	10	271,081,400	289,926,000	28,992,600	590,000,000	10,000,000	20,000,000	29,000,000	59,000,000	472,000,000
	15~19	10	272,919,240	291,891,600	29,189,160	594,000,000	10,000,000	20,000,000	29,400,000	59,400,000	475,200,000
	20~차상층	16	274,757,080	293,857,200	29,385,720	598,000,000	10,000,000	20,000,000	29,800,000	59,800,000	478,400,000
	최상층	2	295,892,240	316,461,600	31,646,160	644,000,000	10,000,000	20,000,000	34,400,000	64,400,000	515,200,000

■ 공통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총 480실 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전 홈페이지와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금액은 타입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 시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공급계약과 관련된 인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합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 됩니다.
- 주차장(오피스텔 설치주차대수 567대분의 면적, 근린생활시설 설치주차대수 2대분의 면적)은 각 설치주차대수 면적을 각 용도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습니다.
- 전체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체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등)은 각 시설별 전유면적(전용면적, 층별공용면적, 벽체공용면적, 부대시설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T.031-898-8896)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용도별(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계약면적 합계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것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공급가의 10%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무이자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도 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금 금액은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본 오피스텔 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되어있는 샘플하우스의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 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가 및 오피스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장안구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20%를 수원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수원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수원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수원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광고일(2022.11.11.)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2022년 11월 25일(금) 16:00시 이후	2022년 11월 28일(월)~11월 30일(수) (10:00~18: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북수원시티프라디움 더 블러스 오피스텔 견본주택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5)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국민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사업주체에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국민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11.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당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11월 25일(금)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구 분	환불방법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 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관련법령에 의거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 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해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11월 28일(월)~2022년 11월 30일(수)	10:00~18:00	**북수원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 오피스텔 견본주택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5)**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국민은행	978201-01-046363	㈜시티주택건설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A-10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층·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 : ex) 101동 1001호 홍길동 →1011001홍길동)하여야 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 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본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를 계약체결 시 당첨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해당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인터넷 청약시 생략 가능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주민등록 초본 1통 (거주자 우선 분양 당첨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분양신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전자수입인지 구입처(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입(1억 ~ 10억이하 : 15만원)
법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전자수입인지 구입처(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입(1억 ~ 10억이하 : 15만원)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 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11.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이자지급 등의 선납할인은 없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수의분양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 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 귀책 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고지 예정
- 대출금액 : 분양금액의 최대 10% 중도금무이자 적용(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분양가격의 10% 범위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복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의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중도금 대출 알선만 할 뿐 중도금 대출 실행으로 인한 신용등급 변동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고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납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IV 선택품목 안내

■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마감재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계약시	2023.06.10	입주지정일	
바닥 마감재 업그레이드 (포세린타일)	84A	거실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84B	거실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2) 가전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타입	제조사	구성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계약시	2023.06.10	입주지정일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전타입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냉동고,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냉장고 : RR40A7995AP 냉동고 : RZ34A7865AP 김치냉장고 : RQ34A7945AP	5,620,000	562,000	562,000	4,496,000	
에어컨 2개소	전타입	LG	안방+거실	안방 : RNW0230C2SP 거실 : RNW0600C2SP	2,990,000	299,000	299,000	2,392,000	
에어컨 4개소	전타입	LG	안방+거실+침실1+침실2	안방 : RNW0230C2SP 거실 : RNW0600C2SP 침실 1,2 : RNW0200C2SP	5,630,000	563,000	563,000	4,504,000	

■ 추가선택 품목 납부계좌 및 입금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 옵션품목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선택 옵션품목금 납부계좌와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에 대한 기간이자는 없음)
- 추가 선택 옵션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국민은행	978201-01-046376	㈜시티주택건설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A-1001홍길동)

V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수원시 장안구)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
-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통지는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VI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사항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건축허가 도면과 착공신고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 Top Light,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포된 각종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현황(인접 APT 및 주택단지,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정류장, 단지 외부도로, 공장시설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호실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공급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자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오피스텔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호실VR은 분양 홈페이지(www.북수원시티프라디움.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정하며,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 면적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관련 법령에서 허용범위 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개별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본 단지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치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 시점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 내 각 호실은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본 사업은 2022년 10월 건축허가 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오피스텔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위치, 모양, 크기, 형태,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또는 생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오피스텔사업의 사업시행자,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등에 따라, 도로면적(보도 포함)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부채납시설(공원, 도로 등),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 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분소유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초등학생은 지구 내 신설초등학교 혹은 천일초등학교로 배정 예정이며, 통학구역은 관련 행정 및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북부중학군 2구역(율전중, 천천중, 이목중, 대평중, 명인중, 정천중, 송원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지망 후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교군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수원시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여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교육시설의 학생 통학구역, 학교군, 배정방법 등 매년 설정, 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지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동 법에 의한 금지행위 및 건축물 용도제한을 적용 받으므로 이 점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계단, 복도 등) 및 이와 유사한 공간(옥상, 피난층 등)은 당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호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호실은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계획시)에 의한 눈부심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 설계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icalli Intensity Scale) Ⅶ- 0.204g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건축물(주동,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및 형태,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호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호실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시행자의 다른 분양상품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분양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하휀룸,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호실은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코어,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외부창호 장식물, 창틀 및 난간의 모양 및 색, 색채),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 등이 설치되어 저층부호실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대지의 단차가 심할 경우 안전용 난간이 추가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수경시설 설치,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사용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되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오피스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Server) 유지, 보수, 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호실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단지 이미지 개선 등 차별화를 위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소방, 이삿짐)동선, 소방매트자리 등의 설치요청에 따라 저층호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통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3개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층에서 해당 동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약 2.7m이며, 지하1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 지하2층~3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 주차구획 높이는 2.1m 이상 계획됨. 주차장의 최저 차로 높이 및 유효 층고 높이에 따라 탑차 등의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의 도로는 소방차 등 비상차량용 도로입니다.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이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의 주차대수는 총 569대(오피스텔 567대, 실당 약1.18대, 근린생활시설 2대)이며, 일반주차보다 규격이 작은 경차 주차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경차규격 가로2.0m×세로3.6m)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고,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호실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호실은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또는 벽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 동출입구와 주차면 사이의 이동거리가 일정치 않고,근접한 주차면이 타 주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불편할 수 있으나,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호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호실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 디자인, 마감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오피스텔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호실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호실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호실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호실은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호실은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석재는 입면디자인에 따라 석종, 마감면 등의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호실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외부창호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호실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호실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되며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기간사업자에 의한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됩니다.
•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관련

• 호실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설치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통신단자함, 호실분전반 설치 위치 및 재질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오피스텔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호실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호실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된 모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난간대 설치여부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호실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류의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등에 적용된 타일자재의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미설치,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

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음.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중문 옵션 도어의 형태 및 천장 몰딩 디테일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호실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호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의 가스계량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호실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호실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배기는 공동배기방식으로 옥상층에 노출로 무동력흡출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주변의 일부 호실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에는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호실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호실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주방가구 상판에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도시가스배관은 개별보일러(주방다용도실)에만 설치되며, 주방내부에는 인덕션 설치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호실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급수·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건축허가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호실별 차이가 있습니다.
• 호실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실외기실에 우수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인·허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크기, 색상,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각 호실 내에 배연창이 설치되며, 배연창 설치로 수동개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소방법령상 오피스텔 각 호 다용도실#1 내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지상2층~10층의 경우 소방법령에 의하여 추가로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주택형별로 기본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의 연결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1층(지상층) 전, 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라도 호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안목치수 기준입니다. 공사 시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다용도실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배수드레인, 선홈통,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다용도실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난간과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의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미관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호실의 주방 다용도실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일부 다용도실 천장에는 호실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내부에 상부 및 하부 호실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창호가 설치되는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저층 호실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별도의 냉난방 시설과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자의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다락부분 바닥난방 설치 등 임의 변경시 건축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 최상층호실 다락은 동, 호 위치에 따라 형태 및 면적이 다르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동, 호 위치에 따라 콘크리트 난간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최상층호실 계약시 모형도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인접한 다른 호실 다락으로 인해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거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에는 주방/화장실 등 무동력흡출기 및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날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의 외부 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다락 바닥마감은 고급 PVC장판으로 시공되며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경사지붕으로 천정고가 0 ~ 1.8m이나 타입별로 높이는 상이하며, 바닥면적에 비해 실사용 가능 면적이 작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다락 외부 테라스 공간은 공용공간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최상층호실이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호실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락과 테라스가 시공되는 최상층호실은 해당 입주자가 다락과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며, 이에 대해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므로 여타 호실은 해당 호실이 테라스 또는 다락과 테라스를 해당 호실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사용중지의 요구·공동사용 및 철거 요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옥상에는 주방, 욕실등의 통기관이 설치되며, 날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 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본 건축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사유로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시공 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오피스텔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등 기타사항

-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및 유상옵션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84A, 84B타입 유니트가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 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실 시공 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실 및 홈페이지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추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 점검구 등은 실제 시공 시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실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시공 시 등기구의 색온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 및 분양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미설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포장,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냉각탑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실은 분양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 시설물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조경도, 단지모형, 각 타입 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건축허가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 및 가구 가전은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의 연출용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호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호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폴리싱타일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 및 가구형태 등은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조하기 바라며, 호실모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감자재, 가구 및 제공품목 등의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되는 품목, 선택할 수 있는 품목 및 평면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적용되지 않은 평면의 형태 또는 제공품목(가구 및 시스템선반 등)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경 외부공간 모형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식재,시설물의 위치 및 포장마감, 포장패턴 등)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라도 호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본 오피스텔의 도면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홈 IOT연동 가전제품은 IOT서비스제공사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호실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단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호실은 일부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실측소음도를 측정하여 소음기준 초과 시 단지 경계선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2-105-0000300호	일금 오백구십오억이천육백칠십이만원정 (₩59,526,720,000)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 포함)까지

구분	주택 또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오피스텔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해당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분양광고에 따른 분양계약자 모집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오피스텔 또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오피스텔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광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합니다)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UG 분양보증 약관의 분양계약서는 본 분양광고의 공급계약서를 뜻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VAT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건축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1,550,000,000	220-81-31256
소방	㈜대경기전	398,750,000	121-81-29661
전기	㈜대경기전	149,930,000	121-81-29661
통신	㈜대경기전	328,570,000	121-81-29661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시행자	시공사		
㈜시티주택건설	㈜시티건설	㈜시티종합건설	㈜시티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172(충무공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3층(삼성동, 에이치에스타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3-1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4호
법인등록번호 134811-0234899	법인등록번호 110111-4888834	법인등록번호 200111-0042295	법인등록번호 284111-0070022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1017-5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
- 사이버 견본주택 : www.북수원시티프라디움.com
- 분양문의 : 031-898-8896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치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여야 함.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